의안번호	제 528 호
의 결 연 월 일	2020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20년 10월 5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28

제출연월일 : 2020. 10. 5.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본청 및 직속기관 소관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학교와 교육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청 국 및 직속기관 간 업무를 조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청 국 간 업무 조정

1)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 (현행)기획국 ⇒ (개정)교육국(안 제5조의3제1항 및 제6조제1항)

나. 직속기관 간 업무 조정 및 학생수련원 분원 통합

1) (현행)충청북도교육문화원 학생수영부 ⇒ (개정)충청북도학생수련원
(안 제17조제2항, 제19조제5호,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5호)

2) (현행)충청북도교육문화원 진천문학관 ⇒ (개정)충청북도교육도서관
(안 별표 2, 별표 3)

3) 충청북도학생수련원 분원 통합 (안 별표 4)
- (현행)제천분원, 제천안전체험관 ⇒ (개정) 제천분원

다.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 보완 (안 제46조의5, 별표 10)

- 제천학생회관 위치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8. 28. ~ 2020. 9. 16.):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제15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

제17조제2항 단서 중 “다만, 문화원의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7,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59번길 33에 둔다.”를 “다만, 문화원의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7에 둔다.”로 한다.

제19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련원의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59번길 33에 둔다.

제2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학생수영장 운영

제46조의5 중 “별표 9와”를 “별표 8과”로 한다.

별표 2, 별표 4,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은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충청북도교육도서관 분관의 명칭과 위치(제16조의2 관련)

명 칭	위 치
미원교육도서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단재로 2494-1
진천문학관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사송3길 17

[별표 4]

충청북도학생수련원 분원의 명칭과 위치(제22조의2 관련)

명 칭	위 치
제천분원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북로 141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학현소야로 393
옥천분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1길 79-14

[별표 10]

학생회관의 명칭과 위치(제49조 관련)

명 칭	위 치
제천학생회관	충청북도 제천시 숭의로 29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3(기획국) ① 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의3(기획국) ①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	<삭 제>
16. ~ 19. (생 략)	16. ~ 19. (현행과 같음)
제6조(교육국) ① 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교육국) ① ----------.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3.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
제17조(설치) ① (생 략)	제17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287번길 56에 둔다. 다만, 문화원의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7,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59번길 33에 둔다.	② ----------. 다만, 문화원의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7에 둔다.
제19조(업무) 문화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19조(업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학생수영장 운영	<삭 제>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제20조(설치) ① (생 략)	제20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련원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1에 둔다.	② ----------.

<단서 신설>	다만, 수련원의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59번길 33에 둔다.
제22조(업무) 수련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22조(업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학생수영장 운영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46조의5(분원) 해양교육원에 두는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9와 같다.	제46조의5(분원) ---------- 별표 8과 ----.
[별표 2]	[별표 2]
충청북도교육도서관 분관의 명칭과 위치 (제16조의2 관련)	**충청북도교육도서관 분관의 명칭과 위치** (제16조의2 관련)
명 칭 / 위 치	명 칭 / 위 치
미원교육도서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단재로 2494-2	미원교육도서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단재로 2494-2
	진천문학관 /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사송3길 17
[별표 3]	**[별표 3] <삭 제>**
충청북도교육문화원 분원의 명칭과 위치 (제19조의2 관련)	
명 칭 / 위 치	
진천문학관 /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사송3길 17	

[별표 4]

충청북도학생수련원 분원의 명칭과 위치
(제22조의 2관련)

명 칭	위 치
제천분원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학현소야로 393
제천생활관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북로 141
옥천분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1길 79-14

[별표 4]

충청북도학생수련원 분원의 명칭과 위치
(제22조의 2관련)

명 칭	위 치
제천분원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북로 141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학현소야로 393
<삭 제>	<삭 제>
옥천분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1길 79-14

[별표 10]

학생회관의 명칭과 위치(제49조 관련)

명 칭	위 치
제천학생회관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대로1길 7

[별표 10]

학생회관의 명칭과 위치(제49조 관련)

명 칭	위 치
제천학생회관	충청북도 제천시 숭의로 29

관 계 법 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4.7.] [대통령령 제30601호, 2020.4.7. 일부개정]

제6조(기구 설치의 일반요건) 제6조(기구 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3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室)은 업무의 성질상 국 또는 과로서는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③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 조사 · 분석 · 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④ 과(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본청의 경우에는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정원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신설 2017. 5. 8., 2018. 2. 27.>

1. 국의 소관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그 소관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⑤ 본청에 설치하는 실 · 국과 과 · 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교육감의 지휘 · 감독하에 둔다. 다만, 교육감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公報)기능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과 · 담당관 등의 설치) 본청에 두는 과 ·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 · 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 · 도 교육청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②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 · 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1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본청 및 직속기관 소관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국 및 직속기관 간 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미미하여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에 해당됨

4. 작성자: 행정국 행정과장 이종수